

■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1] <개정 2007.10.31>

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(제10조관련)

구 분	생활비 비율
부양가족이 없는 자	35%
부양가족이 있는 자	30%

비 고 : 부양의무자 및 부양가족의 범위는 민법에 의한다.